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】

의안번호 286 2023. 10. 23. 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10. 23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0. 23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 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~ 제4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 (안 제5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편성 (안 제6조)
-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(안 제7조)
-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방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과 대비, 대응과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
-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법령의 범위내 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 · 답변요지 :

- O 회의록 참고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『수정가결』
- 7. 소수의견 **요지** : 없 음

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286

2023. 10. 23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수정이유

별표 2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에서 오탈자 수정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 2 비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개정안)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(수정안)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안 별표 2 비고란 중 "제6조제1항제4호"를 "제6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별표 2	별표 2
비고	비고
• 제6조제1항제4호	・ <u>제6조제1항제5호</u>